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44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안호영 · 김남근 · 진성준
박 정 · 임오경 · 이용우
김주영 · 김종민 · 이학영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배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 및 계통접속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배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45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우선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전기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에 우선적으로 접속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 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 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 ----- ----- ----- -----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 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생산 된 전기에 대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우선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부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 ③ (생략) <신 설>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 단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에 우선적으로
접속하게 할 수 있다.